

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합74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7. 16 선고 2020나1200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합742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이효선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국

변론 종결 2020. 4. 24

판결 선고 2020. 5.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¹⁾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 27. 부터 2019. 2. 13. 까지 피고로부터 수백회에 걸쳐

합계 3,574,05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차용하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원리금으로
합계 3,729,55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중 차용금 원금 3,574,05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13,954,958원을 초과한 나머지

141,545,042원(=3,729,550,000원 - 3,574,050,000원 - 13,954,958원)은 피고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돈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 중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 고가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툰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갑 제1호증,을 제4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 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2. 27.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이 사건 돈에 상당하는 규모의 돈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갑 제1,3호증의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이 차용금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더 나아가 살피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2017 . 2. 27.부터 2019. 2. 13.까지 수백회에 걸쳐 돈거래를 하였 고,위 돈 중 대부분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이 없는바,이는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의 행태로 보기 어렵다.

2)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돈에 관하여 변제기 또는 이율 등을 정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일정한 시기에 고정적인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불규칙적인 액수의 돈을수시로지급받았다.

3) 피고는,원고가 'C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깡' 업무를 인수받아 이를 자신 이 하게 되었다면서 돈을 대어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돈을 원고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사장님 카드한 것. 지금 바로 들어가니까요. 염려 마시고 이럴땐 바로 쓸수 있도록 준비해놔요써 카드가 짱이잖여 저는 현금으로 받을거라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좀 계셔여. 동 · ㅎ','200개 들어갔어요 잠자고 나면 돈이 붙으니 규. ㅋ 많이 모으시자고여','네 잘받아서요 사장님. 언능해서 많이 보내개여.','사장님 김치공장사장님 문자 온거예요 제가 아직 카드 기다리고있어요','카드가 많네 오늘도 많이 벌으셨네요','사장님 돈벌거 카드 많이 가지고 왔네여. ㅎ.동 어디세여','사장님. 어제 카드깡하다가 내가 싸인을 한 것이 좀 문제를 걸어서 사실은 좀.힘든상태가 돼서 일이 늦어진거니까 지금 수습이 어느정도 되가고 있으니 돈은 잠그지 않게 하니 걱정.마시고 저도 잘 되길 빌어서 전화드릴께여'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바,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돈을 받아 카드깡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피고는 그

이익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분배하였다고함이 타당하다.

4) 차용금의 변제라면 어떤 돈에 대한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라고 특정하는 것이 통 상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면서도 변제하는 원금이나 이자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200개 들어갔어요', '백만원 들어갔어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이 사건 돈이 모두 차용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고연금 판사 이아영 판사 강민균

1) 원고가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2019. 8. 2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9. 11. 28.자 준비서면에서 청구금액을 140,000,000원으로 감축한다고 하면서도 별도로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위 준비서면의 기재에 비추어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정리함.